

한동대학교 학생생활관 자치회 집행부 회칙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명칭)

본 공동체는 한동대학교 학생생활관 자치회 집행부(이하 "집행부")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

집행부는 한동대학교의 학생생활관이 건학 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여 자율과 책임에 의거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재 양성의 토대가 되는 인성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자치회 회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반 업무를 진행한다.

제 3 조 (설치)

본 공동체는 한동대학교 총학생회 내에 둔다.

제 4 조 (구성)

본 공동체는 임원단 회의, 자치회장단, 국장단, 국원 및 동장단을 두고, 필요에 따라 특별 회의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5 조 (집행부 각 국)

집행부 각 국의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며, 그 내용을 별지의 형태로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특별위원회)

- ① 자치회의 특별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집행부는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각 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으로 칭하며, 대우는 국장에 준한다.

제 7 조(규정)

집행부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한동대학교 학생생활관 자치회 회칙 및 본 회칙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원단 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.

제 2 장 자치회장단

제 8 조 (자치회장단의 업무감독권)

- ① 자치회장은 집행부의 수반으로서 회칙에 따라 국장단과 동장단을 지휘 및 감독한다.
- ② 부 자치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자치회장을 대리할 수 있으며, 자치회장과 함께 국장단 및 동장단을 지휘·감독한다.
- ③ 자치회장단은 국장단과 동장단의 업무나 행정처분이 회칙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,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.

제 9 조 (집행부 구성원의 해임에 대한 권한)

- ①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, 회장단은 집행부 구성원을 해임할 수 있다.
 1. 권한의 오남용
 2. 직무해태
 3. 본 공동체의 명예를 실추
 4. 본 공동체의 운영에 중대한 사고
 5. 기타 집행부 구성원의 자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.
- ② 집행부 구성원의 해임이 있을 경우, 회장단은 해임대상자와 해임 사유를 임원단회의에 고지하여야 한다.

제 3 장 동장단

제 10 조 (동장단의 구성)

동장단은 동장 및 RA 로 구성된다.

제 11 조 (동장의 지위 및 임기)

- ① 동장의 지위는 집행부 국장에 준한다.
- ② 동장의 임기는 한 학기이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 12 조 (동장의 자격 및 임면)

- ① 동장의 임면은 자치회장이 한다.
- ② 동장은 자치회 정회원이어야 한다.
- ③ 동장은 타 선출직 및 임명직과 겸임할 수 없다.
- ④ 동장은 생활관 거주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생활관에 4 학기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.

- ⑤ 동장은 직전 학기 별점 6 점 이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동장의 업무 및 권한)

- ① 동장은 각 RC 팀장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한다.
- ② 동장은 별점부과 및 소급권한을 가진다.
- ③ 점호시간에 점호방송 및 인원점검을 실시한다.

제 14 조 (RA 의 지위 및 임기)

- ① RA 는 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.
- ② RA 는 중임할 수 있다.

제 15 조 (RA 의 업무 및 권한)

- ① RA 는 점호시간을 준수하며 각 층 별 인원점검을 실시한다.
- ② RA 는 수칙집행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공동체 생활을 돕는다.
- ③ 기타 RA 의 업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은 자치회 회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.

제 4 장 집행부 회칙 개정

제 16 조 (발의)

집행부 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발의할 수 있다.

- 1. 집행부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
- 2. 자치회장단의 발의

제 17 조 (절차 및 의결)

- ① 발의된 집행부 회칙 개정안은 7 일 이내에 임원단 회의를 통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.
- ② 전항의 의결은 임원단 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- ③ 상정된 집행부 회칙 개정안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승인에 의해 의결된다.
- ④ 자치회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3 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, 공포된 회칙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정규학기 개강시점부터 적용된다.

부칙

본 자치회 회칙은 자치회회칙개정 TFT 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, 2016 년 3 월 1 일 부로 효력을 갖는다.

[자치회 회칙개정 TFT 위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.]

- ◆ 08 학번 정범진(기계제어공학부)
- ◆ 11 학번 이유준(전산전자공학부)

18대 학생생활관 자치회 '정식' 집행부 각 국 규칙

제 1 조 (집행부 각 국)

집행부는 자치회장단의 통할하의 다음과 같은 국으로 구성된다.

- ① 총무국
- ② 복지국
- ③ 문화국

제 2 조 (국장의 자격 및 임면)

- ① 국장단의 임면은 자치회장단이 한다.
- ② 국장단은 자치회 구성원이어야 한다.
- ③ 국장단은 타 선출직 및 임명직과 겸임할 수 없다.

제 3 조 (국장의 임기)

집행부 국장의 임기는 자치회칙이 정하는 자치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.

제 4 조 (총무국장의 업무)

- ① 총무국장은 본 공동체의 재정과 회계를 담당한다.
- ② 총무국장은 재정을 재원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.
- ③ 총무국장은 자치회장단을 도와 기타 본 공동체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 5 조 (복지국장의 업무)

복지국장은 생활관 내 복지사업을 담당하며, 자치회 회원의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.

제 6 조 (문화국장의 업무)

문화국장은 생활관 내 문화사업을 담당하며, 자치회 회원의 문화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.

19대 학생생활관 자치회 '어울림' 집행부 각 국 규칙

제 1 조 (집행부 각 국)

집행부는 자치회장단의 통할하의 다음과 같은 국 및 직책으로 구성된다.

- ① 복지국
- ② 문화국
- ③ 총무
- ④ 회계
- ⑤ 서기

제 2 조 (직책별 자격 및 임면)

- ① 국장단의 임면은 자치회장단이 한다.
- ② 국장단은 자치회 구성원이어야 한다.
- ③ 국장단은 타 선출직 및 임명직과 겸임할 수 없다.
- ④ 총무, 회계, 서기는 각 국장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.

제 3 조 (국장의 임기)

집행부 국장의 임기는 자치회칙이 정하는 자치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.

제 4 조 (총무의 업무)

- ① 총무국장은 본 공동체의 예산과 결산을 담당한다.
- ② 총무국장은 재정을 재원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.
- ③ 총무국장은 자치회장단을 도와 기타 본 공동체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 5 조 (회계의 업무)

회계는 자치회 내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, 각 RC의 회계들도 총괄 관리한다.

제 6 조 (서기의 업무)

서기는 생활관 내 게시판 및 화장실 소식지를 관리하며, 자치회내 문서를 총괄 관리한다.

제 7 조 (복지국장의 업무)

복지국장은 생활관 내 복지사업을 담당하며, 자치회 회원의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.

제 8 조 (문화국장의 업무)

문화국장은 생활관 내 문화사업을 담당하며, 자치회 회원의 문화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.

20대 학생생활관 자치회 '반올림' 집행부 각 국 규칙

제 1 조 (집행부 각 국)

집행부는 자치회장단의 통할하의 다음과 같은 국 및 직책으로 구성된다.

- ① 총무
- ② 사무국
- ③ 복지국
- ④ 기획국
- ⑤ 정보국

제 2 조 (직책별 자격 및 임면)

- ① 국장단의 임면은 자치회장단이 한다.
- ② 국장단은 자치회 구성원이어야 한다.
- ③ 국장단은 타 선출직 및 임명직과 겸임할 수 없다.

제 3 조 (국장의 임기)

집행부 국장의 임기는 자치회칙이 정하는 자치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.

제 4 조 (총무의 업무)

- ① 총무는 본 공동체의 예산과 결산을 담당한다.
- ② 총무는 재정을 재원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.
- ③ 총무는 자치회장단을 도와 기타 본 공동체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 5 조 (사무국의 업무)

사무국장은 자치회 내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, 각 RC 의 회계들도 총괄 관리한다.

제 6 조 (복지국장의 업무)

복지국장은 생활관 내 복지사업을 담당하며, 자치회 회원의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.

제 7 조 (기획국장의 업무)

기획국장은 생활관 내 문화사업을 담당하며, 자치회 회원의 문화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.

제 8 조 (정보국장의 업무)

정보국장은 생활관 내 민원 및 소통사업을 담당하며, 자치회 회원의 소통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.